

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

사업장 (훈련기관)	① 명 칭	-		
	② 소재지	-		
훈련생 (근로자)	③ 성 명	전복림	④ 생년월일	640205-2*****
	⑤ 주 소	인천 부평구 주부도 로94번길 8, B01호 (부평동,선경하이츠빌 라)	⑥ 전화번호	010-4238-8988
⑦ 반환대상 금액		1,190,800원		
⑧ 추가징수액		1,190,800원		
⑨ 납부할 금액 (⑦+⑧)		2,381,600원		
⑩ 반환명령·추가징수 사유	피보험자격 상실상태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음		⑪ 납부 방법	1. 일시납부 2. 분할납부
<p>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반환·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추후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7년 2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</p> 				
<p>※ 행정심판·행정소송 안내</p> <p>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p>				